2-22	외국 도입 선박선령을 10년으로 제한	해수부장관

□ 권고 내용

○ 해양수산부장관은 세월호와 같이 외국으로부터 도입되는 노후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박의 최초 운항 시점 또는 최초 등록 시점과 이후 5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정기검사의 중요성이 강조되므로, 선령 기준과 상관없이 최초 도입 시 수행되는 정기검사를 포함해 최소 2회 이상의 정기검사를 보장할 필요가 있어 **외국으로부터 도입되는 선박의 선령을 10년으로 제한**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랍니다.

□ 이행 현황

○ 연안여객선 선박검사는 해외 도입 중고선박을 포함하여 「선박안전법」, 「해운법」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동일한 기준으로 실시 중

- 선박검사를 통과한 **외국 도입 선박에 대해 선령을 10년으로 제한하여야 할 기술적 근거가 없으며,**

* 외국의 경우 선령제한 관련 규정이 없고 선박검사를 통해 안전 확보

- 외국 도입 선박에 한정하여 선령 제한 적용 시 수입제한 규제에 따른 **국제통상법 저촉이 우려되므로, 중장기 검토 필요**

○ 도입 선령을 10년 내로 제한하기보다는 **정기 및 중간검사 등의 철저한 검사로 국내 건조 선박과 동일한 수준의 안전성 확보**

《내항여객선의 선령별 검사 종류》

구분	검사종류	검사시기	관련규정
선령 20년 이하	(별도)건조검사	건조 또는 도입 시	선박안전법 제7조
	정기검사	매 5년	선박안전법 제8조
	제1종 중간검사	매 1년	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9조
선령 20년 초과 25년 이하	정기검사	매 1년	선령 20년 초과 내항여객선의 선박검사기준
선령 25년 초과 30년 이하	정기검사 +피로강도평가 등	매 1년	
	선박관리평가	매 1년	내항해운에 관한 고시

□ 향후 계획

○ 해당사항 없음